

退職給與充當金에 對한 研究

辛 貴 喆

A Study on the Allowance of Retirement

Shin kui chul

目 次.....	
I. 序 言	2. 財務的認識
II. 退職金의 意義	3. 計算規制的認識
III. 退職金規定	VII. 退職給與充當金 設定의 具體的인 方法
IV. 充當金	1. 將來支給額豫測方式
1. 評價性充當金	2. 期末要支給額計上方式
2. 負債性充當金	3. 現價方法
3. 其他充當金	VIII. 結 言
V. 退職給與充當金의 性格	參考文獻
VI. 退職給與充當金의 認識	1. 認識基準

Abstract

Superannuation which is a premise for the allowance of retirement is a sort of wage as well as an allowance for continuous services with the Labor Standards Law. It also includes rights and duties to be paid for employees, respectively.

Therefore, when an enterprise pays an employee the allowance of retirement as an outlay of the fiscal year, it is not an appropriate step in the balance of profits and losses.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tem for the allowance of retirement so as to cover allotments of the outlay during a period in which the cause of outlay occurs.

It is impossibl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account discovering the accurate financial condition of a certain time and profits and losses of a certain period, if an enterprise settles accounts of the allowance of retirement without reasonable establishment of the item.

I. 序 言

退職給與充當金의 性格을 究明하자면 于先 退職金의 性格을 理解하여야 한다고 본다. 退職

金이라하면 雇傭關係에 따라支給하는 것으로서 勤續에 對한 功績報償 老後의 生活保障의 性質을 가지며 또한 企業의 生産性的 維持 昂揚 勞動力의 確保策의 效果를 가지는 費用으로서 單純하게 企業内部關係에서 單 發生하는 것이 아니고 重要한 權利 義務關係이므로 그 支給義務에 對하여는 勞働法의 立場에서 檢討할 必要가 있다. 그리하여 對外的인 法律上의 權利義務關係를 前提로 하여 經濟主體로서 企業側에서 財務上의 性格을 究明하여야 할 것이다.

會計學上 退職給與充當金이라 하면 退職金을 支給하였을 때 一時的 費用으로 處理하지 않고 支出의 原因이 發生한 期間에 割當하여 負擔하게 하고 實際로 支出할때까지 그 發生額을 留保하여 移越시킨 負債를 말하는 것으로 負債性充當金의 一種에 該當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意味를 가지는 退職給與充當金의 性格에 對하여는 會計理論上에서는 退職給與充當金과 退職金費用의 關係가 退職金費用의 期間見積計上이란 點에서 退職給與充當金設定의 形式을 取하나 商法 또는 稅法의 立場은 退職給與義務 또는 債務의 時點認識에서 退職金費用의 計上이라는 方式을 取하고 있다. 이와 같은 退職給與充當金의 本質을 解明하고자 한다.

Ⅱ. 退職金의 意義

一般的으로 退職金이란 어느 期間繼續하여 雇傭關係 또는 委任關係가 終了되었을 時 在職中의 勞務에 對한 報酬로서 支給되는 給付를 意味하며 이는 支給하는 根據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區分된다.

1. 確定된 義務에 따라 支給하는 退職金으로서
 - ① 勤勞協約에 따라 支給하는 退職金
 - ② 就業規則에 따라 支給하는 退職金
 - ③ 勤勞契約(雇傭契約)에 따라 支給하는 退職金

위의 같은 경우는 受領適格者가 定하여진 規定 또는 約定에 따라 當然하게 受給權을 가지게 된다.

2. 會社의 內規 또는 勞使慣例에 따라 支給하는 退職金

이 경우 受領適格豫定者는 原則上에 있어서는 一種의 期待權을 가지며 會社의 支給意思의 表明과 同時에 効力이 發生한다.

3. 會社에서 贈與로서 支給하는 退職金

이는 會社의 支給意思의 表明에 對하여 相對方이 受諾하므로써 効力이 發生한다.

以上과 같이 區分되는 退職金의 性格에 對하여 法令上 明文規定은 없으나 通說에 依한다면 勤勞協約, 就業規則, 勤勞契約等の 根據에 依한 退職金은 勤勞基準法 第18條에 「賃金이라 함은 使用者가 勤勞의 對償으로 勤勞者에게 賃金, 俸給 其他如何한 名稱으로든지 支給하는 一切의 金品을 말한다」라는 規定을 參照하면 退職金도 一種의 賃金에 屬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立場에서 이와 같이 定하여진 基準이 없는 卽 義務로서 아닌 恩惠로서 支給되는 退職金은 福利厚生

給付라고 볼수 있다.

勤勞基準法 第28條에 「使用者는 繼續 勤勞年數 1년에 對하여 30日分 以上の 平均賃金을 退職金으로서 退職하는 勤勞者에게 支給할 수 있는 制度를 設定하여야 한다. 但 勤勞年數가 1年未滿인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라는 退職金制度의 規定에 依하면 一定期間繼續勤務에 對하여 退職時에 支給하는 退職金은 勤續手當의 一種에 該當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서 말하는 勤續手當은 單純한 勤續手當이 아니고 勤續期間에 應하여 遞増하는 勤續手當이다.

이와 같이 勤勞基準法上的 退職金은 勤續手當으로서의 賃金이라고 解釋하고 있다. 그러나 義務로서 定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勞動의 對償으로서 性格을 갖이지 아니 하므로 이 範圍에서는 除外되는 것이다.

勤勞基準法上的 賃金인 退職金과 賃金이 아닌 退職金은 本質적으로 法的權利義務關係가 다른 것이다. 戰後의 民主主義體制가 確立됨에 따라 顯著한 進展을 보게 된 것은 勞動關係라고 하여도 過言은 아니다. 이에 따라 退職金도 戰前부터 實施하여 온 恩惠의退職金과 戰後急速하게 變革確立된 勞動法上的 退職金과의 法的性格의 差異를 나타 내었다. 그러므로 이에 對應하여 企業經理, 租稅制度에서 退職金制度를 完全하게 採用 實施하지 아니 하는 것은 이 方面의 關係者의 後進性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勤勞基準法上的 退職金의 本質은 勤續手當이므로 退職을 原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勤續을 原因으로 하여 支給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本質을 充分이 理解하지 못하므로써 退職金의 權利義務關係, 費用認識 등에서 틀리는 判斷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Ⅲ. 退職金規定

會社와 從業員間의 退職金에 關한 權利義務의 根據가되는 規定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勤勞協約에 依한 退職金規定(勞動組合法 第34條 參照)
2. 勤勞契約에 依한 退職金規定(勤勞基準法 第22條 參照)
3. 就業規則에 依한 退職金規定(勤勞基準法 第94條 參照)
4. 法定外退職金規定(勞動法の 適用이 아닌 規定으로서 上記以外의 것)

上記의 規定中 1. 2의 規定은 法律行爲로서 會社와 從業員間의 約定內容에 따라 權利義務가 發生하게 되나 3의 경우는 勞動法上的 特別規定에 依한 것으로서 單純한 社規社則이 아니고 作成屆出과 遵守履行의 義務가 強制的으로 規定되어 있다.

就業規則에서 退職金에 關한 事項이 決定되면 會社는 그 規定內容에 따라 當然히 支給義務를 가지게 되며 受給適格者는 當然히 受給權을 取得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退職金規定의 相互間効力은 退職金 支給義務의 根據가 되는 勤勞基準法 및 勞動組合法에 依한다면

第一順位 勤勞協約에 依한 退職金規定

第二順位 就業規則에 依한 退職金規定

第三順位 勤勞契約에 依하여 定하여진 退職金 事項

以上과 같은 順位에 따라 優先 關係를 가지게 된다.

註(Ⅰ) 勞動組合法 第34條「團體協約은 書面으로 作成하여 當事者雙方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註(Ⅱ) 勤勞基準法 第22條「使用者는 勤勞契約締結時에 勤勞者에 對하여 賃金, 勤勞時間 其他의 條件을 明示하여야 한다」

註(Ⅲ) 勤勞基準法 第94條「常時 10人 以上の 勤勞者를 使用하는 使用人은 다음의 事項에 關하여 就業規則을 作成하여 社會部에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項—4項 略, 5項 退職金, 賞與와 最低賃金에 關한 事項, 6項—11項 略」

註(Ⅳ) 勤勞基準法 第97條 第1項「就業規則은 法令또는 當該事業場에 對하여 適用되는 團體協約에 反할 수 없다」

註(Ⅴ) 勞動組合法 第36條「第1項 團體協約에 定한 勤勞條件 其他 勤勞者의 待遇에 關한 基準에 違反하는 就業規則 또는 勤勞契約의 部分은 無効로 한다」

Ⅳ. 充當金

會計學上充當金은 將來特定의 事項에 對하여 支出 또는 資産의 減少 或은 費用增加를 填補할 目的으로 留保된 資金을 나타내는 負債의 計定이다. 이를 具體적으로 풀이 하자면 充當金은

① 將來發生하는 支出, 資産減少, 費用增加等 特定한 事項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目的이 明確하지 않고 漠然한 留保는 充當金이 아니다.

② 充當金은 會計學上 負債計定이다. 卽 充當金은 特定의 事項에 對하여 支出하여야 할 債務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서 말하는 債務는 他人에 對한 債務는 아니나 事項에 對한 義務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眞實한 負債라는 것이 不當하다면 準負債라고 하여도 妥當할 것이다.

③ 充當金を 負債에 計上한다는 것은 配當利益을 그만큼 減少하여 不特定의 資産이 留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는 充當金은 會計學上의 立場에서 分類하자면,

① 評價性充當金—減價償却充當金, 貸損充當金 等

② 負債性充當金—納稅充當金, 修繕充當金, 退職給與充當金 等

③ 其他充當金—價格變動充當金, 自家保險充當金 等

評價性充當金이라 함은 特定의 資産價額에 對하여 修正의 必要性이 있는 事由가 있을때 設定되는 것이며 이에 屬하는 貸損充當金은 賣出債權이나 貸與債權에서 回收不能으로 될 貸損額을 當該事業年度의 費用에 計上하고 이들의 將來貸損發生額을 對備하기 위하여 設定한 것이며 減價償却充當金은 土地를 除外한 有形固定資産에 對하여 그 取得價額을 利用期間의 減價償却費를 期間配分하여 償却累計額을 充當金으로 計上한 것으로서 固定資産의 取得價額과 充當金과의 差類은 未消費原價를 表示하게 된다. 貸損充當金과 減價償却充當金은 貸借對照表上에 記載할 때는 該當資産에서 控除하는 形式으로 表示된다.

負債性充當金은 將來의 特定支出에 對한 準備額으로서 그 負擔이 該當事業年度에 屬하고 그 金額을 見積할 수 있으나 評價性充當金과 같이 特定資産이 存在하지 않는 것이 普通이다. 그러므로 이는 控除形式을 取하지 않고 負債의 部에 表示한다. 이에 屬하는 納稅充當金은 該當年度에 負擔할 稅額이 未定인 때 이를 推定計上한 未支給豫想額의 稅金을 充當金으로 處理한 것으로서 稅法에 依한 法人稅, 事業所得等의 賦課에 對備하기 위한 利益金의 留保이다.

修繕充當金은 將次建物, 機械裝置, 船舶等을 大修繕하게 될 때 그 修繕한 事業年度에 巨額의 修繕費를 計上한다는 것은 企業財政上 또는 期間損益算定上 適切한 會計處理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各年度의 負擔을 公平하게 하기 위하여 設定한 것이며 退職給與充當金은 任員 또는 從業員이 退職할 때에 支給하기 위하여 對備하는 利益金의 留保이다. 다시 말하자면 退職金의 支給은 給與規程과 같은 退職金規定이 있을 때 그 支給할 退職金은 每年 增加되는 支給義務가 發生되므로 이를 退職時의 事業年度에 全額費用으로 計上한다는 것은 期間損益算定上 適切한 處理가 아니므로 各事業年度마다 退職金의 發生額을 費用計上하여 將來의 退職金支給에 對備하기 위하여 退職給與充當金이 設定된다.

其他 充當金은 準備金과 같은 性格을 가지며 負債의 部에 計上되는 것으로서 이에 屬하는 價格變動充當金은 在庫資産이나 有價證券의 價格이 將來下落하는 경우에 對備하기 위한 準備金이며 自家保險充當金은 大企業에서 自己所有의 建物, 工場, 機械裝置等이 火災, 其他의 危險性에 對備하기 위하여 外部의 保險業者와 保險契約를 締結하는 대신 會社自体에서 每期 一定金額의 費用을 充當金으로 積立留保한 것으로서 偶發損失準備金의 一種인 것이다.

V. 退職給與充當金の 性格

前述한 바와 같이 退職給與充當金은 退職金을 支給하였을 때 一時의 費用으로 하지 않고 發生主義의 立場에서 支出의 原因이 發生한 期間에 割當하여 負擔하게 함과 아울러 他面에서는 現實로 支出할 때까지 그 發生額을 負債로서 留保하여 移越시킨 것을 말한다.

會計實務上에 있어서의 退職給與充當金の 實際 計上方法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 ① 企業會計原則 卽 損益發生主義의 立場에서 期間配分上에서 退職給與充當金을 設定하는 경우
- ② 損益發生主義와 財産確定主義에 依한 二元的인 面에서 退職給與充當金을 設定하는 경우
- ③ 法人稅法施行令 第18條에 定한바에 依하여 그 限度額 以內에 退職給與充當金을 設定한 경우

損益發生主義의 立場에서 純理論的으로 退職給與充當金을 생각한다면 退職者가 發生할 때 退職時의 本俸, 勤續年數 等を 豫測하여 退職金支給額等을 見積하여 이를 期間 配分하여야 한다. 그러나 退職者의 勤續年數와 果進退職金의 長期的인 見積 및 配分에 關하여서는 理論的으로 算

式的으로 合理的인 實施가 可能하다고 解明되지 않기 때문에 豫測以上으로 客觀的인 方法을 適用한다는 것은 困難하다.

稅法上에 있어서는 退職給與充當金은 1年間 繼續하여 勤勞한 使用人에게 支給한 總給與額의 10分の 1에 相當하는 金額을 限度로 하여 計算하여 退職給與充當金の 累積額이 當該事業年度 終了現在 使用人の 全員이 退職할 경우에 退職金으로 支給되어야 할 推計額의 100分の 50을 限度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退職金은 基本的으로는 賃金の 後支給이므로 退職金支出以前에 退職金の 支出必要性的 原因이 發生하게 된다. 또한 退職金은 勤績에 對한 功績報償 老後의 生活保障의 性質을 가지며 企業의 生産性的 維持昂揚 勞動力의 確保等の 效果를 가지는 費用이라는 意味에서 會計上 退職給與充當金을 設定하게 된 것이다.

退職給與充當金の 性格은 會計理論上의 立場에서는 「退職金費用의 認識結果」로서 期間損益計算의 側面에서 取扱하나 이에 對하여 商法 또는 稅法上의 立場은 「退職金債務自體의 認識」으로서 財産計算의 側面을 取扱하고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會計理論의 立場은 退職給與充當金과 退職金費用의 關係가 退職金費用의 期間的 見積計上을 退職給與充當金 設定의 形式을 取하는데 對하여 商法 또는 稅法의 立場은 退職給與義務 또는 債務의 時點 認識에서 退職金費用의 計上이라는 方式을 取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相違點이 생기는 根本的인 原因은 會計理論은 發生主義會計를 基礎로 하는 期間損益計算의 思考로서 財産計算의 思考보다 優位性을 가지며 또한 法의 事項보다는 經濟的 事實의 認識을 重視하는데 對하여 商法은 期末 現在의 債權債務等 모든 財産의 網羅性과 그 明瞭性을 基本原理으로 貸借對照表를 重視하며 稅法에서는 課稅所得의 計算上 損金으로서 許容되는 退職給與額과 그 限度額에 對한 計算基準의 明確性을 確保할 必要性에서 權利義務確定主義의 原則을 採擇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VI. 退職給與充當金の 認識

1) 認識基準

會計原則, 商法の 計算規定 稅法の 所得計算規定 등은 모두가 計算規制이며 그것의 規制對象은 企業財務이다. 卽 企業의 財務的 事實에 依하여 各各의 立場에서 이것을 認識하여 그 目的에 따라 規制하고자 하는 것이다.

認識基準으로서 企業會計原則에서는 發生主義, 稅法에서는 權利義務確定主義를 擇하고 있다. 發生主義라 함은 企業活動上에 있어서의 諸事實 卽 勞務 購買 生産 販賣等の 諸事實이 있는 경우 이들이 어떠한 財務的 事實이 發生하였나를 알기 위해 第一次的으로 財務的 認識이 行하여지고 다음으로 財務的 事實로서 認識된 것이 經營成果計算上 어떠한 收益 또는 損費에 該當하느냐를 알기 위해 第二次的으로 計算規制上의 立場에서 認識하는 基準을 말하며 權利義務確定

主義는 所得計算上 益金 또는 損金에 該當하느냐 않느냐를 알기 위해 第二次的으로 計算規制上 認識하는 基準을 말한다.

會計原則 商法, 稅法等의 價値認識 基準은

會計原則—經營活動에 基因하는 經濟價値의 獲得 消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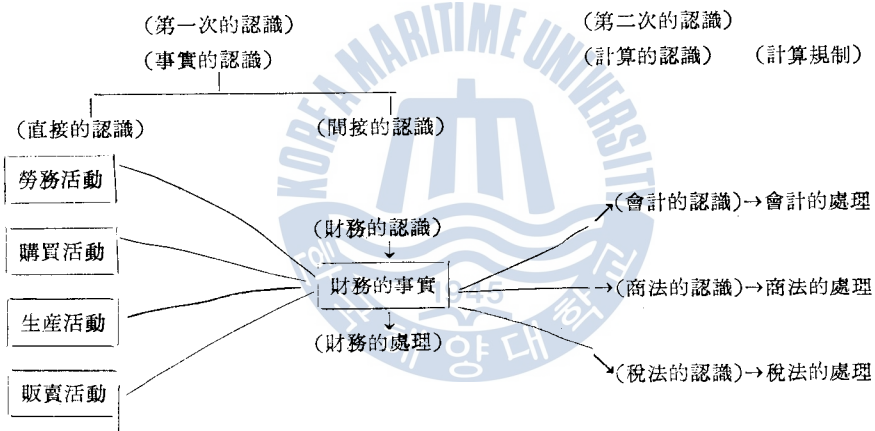
稅法—經濟社會的關係에 있어서의 財産的 權利義務의 得失

商法—株主 債權者等の 權利保護의 立場에서의 商的價値의 有無

等を 立脚點으로 하고 있다.

以上の 內容을 要約한다면 다음 表와 같다. 이에서 注意할 것은 各各認識의 立場이 다르다 하여도 認識對象은 同一하며 따라서 事實認識도 本質的으로는 다르지 아니 하나 다만 立場에 따라 다른 것은 規制目的 規制方法에 따른 處理等の 計算規制인 것이다.

經營活動의 認識



2. 財務的認識

退職給與充當金の 前提가 되는 退職金の 意義 및 退職金支給義務의 性格에 對하여는 앞에서 吟味하였다. 이제 退職金을 企業内部에 있어서의 財務的性格을 分析코자 한다.

가) 一般退職金

企業經營上 消費된 勞務價値의 一部로서 勞務提供을 받았을때 구려 時間의 經過와 아울러 最低限發生하는 費用이며 또한 이는 確定 必要費用으로서 支給義務는 最低限不可避한 債務이다.

나) 停年退職加給金

從業員이 停年까지 勤續하느냐 아니 하느냐는 未必事項이므로 반드시 發生한다고 볼수 없는 不確定未必費用이나 停年까지 勤續하는 경우에는 不可避한 債務이다.

다) 業務上退職加給金

業務上事由로 解雇 또는 希望退職事由가 發生하였을 때는 臨時損失이며 支給義務는 未必債務이다.

3) 計算規制的認識

退職金支給義務에 따라 設定된 退職給與充當金은
 會計原則—充當金(見積債務, 不確定債務)
 商 法—債務(條件付債務, 契約上の 債務)
 稅 法—充當金(未成立債務)
 等으로 認識하고 있다고 본다.

VII 退職給與充當金設定의 具體的인 方式

退職給與充當金 設定의 具體的인 方式에 對하여 日本大藏省 企業會計審議會報告로서 「退職給與充當金の 設定에 對하여」 「企業會計上の 個別問題에 關한 意見 第二」를 1968年 11月 11日 公表하였다. 이것은 企業이 退職給與充當金を 設定하는데 있어서의 基本的인 方法과 會計處理의 基準을 明確하게 밝힌 것으로서 그 報告書에 依하면 退職給與充當金設定의 具體的인 方法으로서 將來支給額豫測方式

期末要支給額計上方式(支給倍率加味方式)

現價方法

等 세 가지 方法을 列舉하고 있다. 이 方法에 對하여 具體的으로 풀이 하자면

1) 將來支給額豫測方式

同報告書에 依하면 「將來支給額豫測方式은 將來的 退職金を 各期에 支給하는 給與額을 基準으로 期間配分하는 方法이다. 具體的으로는 從業員의 全勤續期間에 있어서의 總給與額(將來的 給與額은 見積에 依한다)으로서 當期에 支給된 給與額을 나눈 것을 다시 從業員이 將來退職하는 경우 支給할 見積退職金の 總額에 곱하여 算出한 金額을 每期의 退職金費用으로 計上하는 方法이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方法에 依한 見積退職金 負擔額 卽退職給與充當金の 計算은 다음과 같다.

$$\text{當期退職給與充當金} = \text{見積退職金の 總額} \times \frac{\text{各期에 支給되는 給與額}}{\text{全勤續期間에 支給된 見積給與額}}$$

이 方法을 適用하는 경우 從業員이 將來退職할 때 支給할 退職金 및 昇給率을 豫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高度의 專門的인 推定計算을 利用하여야 하므로 實務에 있어서 保險數理專門家의 援助가 必要하다.

將來支給額豫測方式에 依한 退職金은 給與支給額에 比例한다는 것을 前提하고 있으며 이 前提는 妥當性이 있다고 생각되나 細部的으로 檢討한다면 問題點이 있다. 말하자면 會社에서 退職金은 勤續年限이 短期인 때는 支給하지 않는다는 規定이 있을때 이들의 給與까지 劃一的으로 退職金에 計算되는 結果가 되는 問題가 나타난다.

2) 期末要支給額計上方式(支給倍率加味方式)

同報告書에서는 「期末要支給額計上方式은 期末現在에 全從業員이 退職하는 경우 退職金要支

給額과 前期末에 있어서의 退職金 要支給額과의 差額을 毎期の 退職金 費用으로서 計算하는 方法이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를 算式으로 表示하자면

$$\text{當期退職給與充當金} = (\text{期末의 全從業員에게 退職時支給할 退職金見積額}) - (\text{前期末全從業員에게 退職時 支給할 退職金 見積額})$$

위의 算式에서 말하는 期末의 全從業員에게 退職時支給할 退職金見積額은 期末現在에 全從業員이 退職하는 경우 退職金要支給額을 表示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前期末現在の 從業員給與月額 合計 ₩10,000,000이고 退職金の 支給倍率 平均이 30%일 때 退職金要支給額은 ₩3,000,000이다. 當期末 現在の 從業員給與月額 合計 ₩12,000,000이고 退職金の 支給倍率 平均이 35%일 때 退職金支給額은 ₩4,200,000 이다. 이 경우 當期 退職給與充當金은 ₩1,200,000 이다.

$$₩4,200,000 - ₩3,000,000 = ₩1,200,000$$

이 方式은 全員이 一時에 退職한다는 假定하는 點이 自体實情에 適應하지 않는다는 批判이 있으나 退職金債務의 總額을 알지 못하므로 計算의 便宜로서의 前提라고 생각 된다. 다시 말하자면 全員이 一時에 退職한다는 事實을 前提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退職金の 期間配分の 尺度로서 各從業員의 期末現在에 있어서의 潜在的 退職金債務을 計算하는데 不適當한 것이라고 본다.

3) 現價方法

同報告書에서는 「現價方法은 將來支給額豫測方式 또는 期末要支給額計上方式에 依한 各期の 費用配分額으로 計算된 金額을 退職金支給豫定期까지의 期間 또는 一定割引率에 依하여 現在 價值額을 算出하여 期首退職給與充當金の 利子相當額과 合計한 金額을 毎期の 退職金費用으로 計上하는 方法이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 方法은 將來支給額豫測方式 및 期末要支給額計上方式에 利子の 觀念을 活用한 方式이다. 다시 말하자면 將來支給할 金額을 算出하여 利子を 考慮한 現時點에서 支給한다면 어느 程度를 計上하느냐의 一般的인 現價方式을 말한다. 이 方式에서는 前記의 方式에서 計算된 各期の 退職金負擔額의 大部分은 相當한 期間이 經過한 後 現金支出이 되므로 各期の 負擔額을 現在 價值額 卽 豫想된 支給時點에서 現在の 計算時點까지의 期間에 一定割引率에 依하여 現在 價值額을 計上하여 이를 各期の 正味負擔額으로 하며 또한 退職給與充當金도 現在 價值額으로 表示하는 것이 理論적으로 妥當하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자면 期首退職給與充當金殘額이 ₩10,000,000 이 중에서 ₩2,000,000은 6個月後 支給할 것이며 ₩8,000,000은 年度末(一年決算法人)까지 繼續하는 경우 割引率 6%일 때 利子相當分으로서 退職給與充當金 算出額은 ₩540,000 이다. 이때 年度末의 退職給與充當金の 新規額의 現價가 ₩1,500,000 이라면 年度末에 있어서의 會計處理의 記帳은

(借邊) 退職金 2,040,000 (貸職) 退職給與充當金 2,040,000

$$\left. \begin{array}{l} \text{(計算法)} \quad 8,000,000 \times 6\% = 480,000 \\ \quad \quad \quad 2,000,000 \times 6\% \times \frac{1}{2} = 60,000 \end{array} \right\} 540,000 \quad 540,000 + 1,500,000 = 2,040,000$$

위와 같은 세가지 設定法中에서 現行 우리나라의 稅法은 期末要支給額計上方式을 適用하고 있다.

法人稅法 第13條 및 所得稅法 第33條에 依하면 「各事業年度의 終了日 現在在職하는 使用人の 全員이 退職할 경우에 退職給與로서 支給되어야 할 金額의 推計額中 直前事業年度終了日 現在의 推計額을 控除한 金額을 限度로하여 計算한다」라고 規定하고 具體的인 計算方法에 對하여서는 法人稅法施行令 第18條 및 所得稅法施行令 第65條에 依하면 「退職給與充當金은 1年間 繼續하여 勤勞한 使用人에게 支給한 總給與額의 10分の 1에 相當하는 金額을 限度로 하여 計算한다」, 「退職給與充當金の 累積額은 當該事業年度 終了日 現在 使用人の 全員이 退職할 경우에 退職給與로 支給되어야 할 推計額의 100分の 50을 限度로 한다」라고 明示하고 있다. 이를 算式으로 表示하자면

$$\text{當期退職給與充當金} = \{ \text{年間支給總給與額} - (\text{1年未滿使用人總給與} + \text{年間賞與金支給總額}) \} \times \frac{1}{10}$$

이와 같이 稅法上에서는 一律의으로 支給倍率을 10%로 하여 算出한 金額을 當期の 損費로서 處理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VIII 結 言

以上과 같이 檢討한 結論으로서는 退職給與充當金은 確定債務로서 退職金要支給額의 最低限度로서 設定된 것이므로 이를 設定하지 않고 決算節次를 맺는다는 것은 會計의 目的인 一定時點의 正確한 財政狀態의 把握과 一定期間의 損益確定을 할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企業의 出資者에게 配當을 行하는 것은 結局配當의 先給이며 企業의 債權者 또는 債務者가 될 사람 卽 將來의 投資家, 資金貸與家 去來處에 正確한 參考資料의 提供이라 할수 없으며 또한 租稅를 賦課하는 경우는 租稅의 先受가 되는 것이다.

退職金을 勤勞協約, 勤勞契約, 就業規則 등에서 義務로서 負擔하여야 하는 以上 現行法上稅法施行令 第18條 및 所得稅法施行令 第65條에 「退職給與充當金の 累積額은 當該事業年度 終了日 現在 使用人の 全員이 退職할 경우에 退職給與로 支給되어야 할 推計額의 100分の50을 限度로 한다」라고 規定된 것을 理論의으로 適正한 退職給與充當金을 求하여 當該事業年度 終了日 現在 全從業員이 退職할 경우 退職給與로 支給되어야 할 推計額 全額을 退職給與充當金으로서 設定하도록 企業會計 및 租稅制度를 順次的으로 改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參 考 文 獻

- 1) 李龍澤：新會計學，日新社，1966.
- 2) 林雲燮：會計學，法文社，1971.
- 3) 洪永杓：勞動法論，法文社，1966.
- 4) 佐藤孝一：新會計學，中央經濟社，昭和42年.
- 5) 太田哲三：會計學，千倉書房，昭和38年.
- 6) 企業會計，中央經濟社，第15卷 第10號，第20卷 第12號，第22卷 第7號，第26卷 第13號.
- 7) 稅法全集，弘文館，1975.
- 8) 法典，玄岩社，1974.



